

2022년 최저임금과 상여금·복리후생비 반영 시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기준

1. 서설

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최저임금 8,720원 대비 5.1%¹⁾ 인상된 9,160원(+440원)으로 적용됨에 따라 2022년 월 최저임금액은 얼마인지와 상여금과 식대 등 복리후생비가 지급되는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련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

2. 관련 법규

1) 최저임금법 제5조(최저임금액)

- ① 최저임금액(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시간·일(日)·주(週) 또는 월(月)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. 이 경우 일·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(時間給)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.
-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.

2)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(최저임금의 범위)

제2조(최저임금의 범위) 「최저임금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(算入)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. 다만, 별표 2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한다.

1)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.1%의 산출 근거는 '경제성장률(4.0%)+ 소비자물가상승률(1.8%)-취업자증가율(0.7%)'이다.

3. 고용노동부, 2022년 최저임금 고시내용

1) 최저임금액

- ① 시간급(모든 산업) : 9,160원
- ② 월 환산액(209시간,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 기준으로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: 1,914,440원(9,160원×209시간)

2) 최저임금 적용기간 : 2022. 1. 1. ~ 2022. 12. 31.(1년간)

4. 상여금·복리후생비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주요내용

| 구분 | 내용 |
|-------|--|
| 산입여부 | 상여금·복리후생비 산입함.(단, 연도별 단계적 산입) |
| 상여금 |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“상여금 또는 그 밖의 명칭이라도 이에 준하는 임금(이하 ‘상여금’) |
| 복리후생비 | “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임금으로서 통화 또는 현물(이하 ‘복리후생비’)” |

【정기상여금·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및 금액】

2022년도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경우 2022년도 월최저임금액 1,914,440원의 10%인 **191,444원**, 복리후생비는 2022년도 월최저임금액 1,914,440원의 2%인 **38,289원**에 해당하는 금액을 **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** 하고, 초과되는 금액(상여금은 **191,444원** 초과금액, 복리후생비는 **38,289원**과 금액)을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(포함)할 수 있습니다. 아래 표와 같이 연도별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비율이 감소하다가 최종 2024년에는 매월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모두 포함될 예정입니다.

| 연도 | '19년 | '20년 | '21년 | '22년 | '23년 | '24년~ |
|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|
| 정기상여금 | 25% | 20% | 15% | 10% | 5% | 0% |
| 현금성 복리후생비 | 7% | 5% | 3% | 2% | 1% | 0% |

5.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반영한 2022년 최저임금 산정 예시와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단방법

1) 산정 예시 1. : 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지급되는 경우

(※아래 산정 예시 고용노동부 자료 참조하여 작성함)

| 급여 항목 | '21년 | | '22년 | 비 고 |
|---------|---------|---|--------------|--|
| 기본급 | 180만원 | | 185만원 | 5만원 ↑ |
| 정기상여금 | 40만원 | ⇒ | 40만원 | 최저임금 산입금액 (208,556원) *월 최저임금 10%(191,444원) 미산입 |
| 복리후생비 | 10만원 | | 10만원 | 최저임금 산입금액 (61,711원) *월 최저임금 2% (38,289원) 미산입 |
| 월급여액 | 230만원 | | 235만원 | 5만원 ↑ |
| 연간 월급총액 | 2,760만원 | | 2,820만원 | 60만원 ↑ |

▶ 2022년 기본급 185만원은 2022년 월 최저임금 1,914,440원에 64,440원이 부족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나, 정기상여금에서 10% 초과된 **①208,556원**(400,000원-191,444원)과 복리후생비에서 2%초과된 **②61,711원**(100,000원-38,289원) 합계금액(①+②) 270,267원을 기본급 185만원에 산입할 경우 총액이 2,120,267원으로 2022년 월 최저임금 1,914,440원보다 205,827원 초과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.

(※천원단위 비교금액으로 천원미만 금액을 달라질 수 있음)

2) 산정예시 2. : 상여금 없고 복리후생비 월 20만원 지급하는 경우

| 급여 항목 | '21년 | | '22년 | 비고 |
|---------|---------|---|--------------|--|
| 기본급 | 180만원 | | 185만원 | 5만원 ↑ |
| 정기상여금 | 없음 | ⇒ | 없음 | - |
| 복리후생비 | 20만원 | | 20만원 | 최저임금 산입금액(161,711원) *월 최저임금 2% (38,289원) 미산입 |
| 월급여액 | 200만원 | | 205만원 | 5만원 ↑ |
| 연간 월급총액 | 2,400만원 | | 2,460만원 | 60만원 ↑ |

▶ 2022년 기본급 185만원은 2022년 월 최저임금 1,914,440원에 64,440원이 부족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나,, 복리후생비에서 2% 초과된 161,711원(200,000원-38,289원)원을 기본급 1,850,000에 산입할 경우 총액이 2,011,711원으로 2022년 월 최저임금 1,914,440원보다 97,271원 초과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음.

(※천원단위 비교금액으로 천원미만 금액을 달라질 수 있음)

6. 결어

2019년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내용 중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과 식대,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비가 2024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증가됨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2022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에 방식에 대한 검토와 복리후생비 수당항목 신설과 증액 등을 통해 최저임금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나 사업장의 임금체계 특히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도 포함시키고 통상임금에서는 제외하고자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는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성 판단기준에 맞추어 충분한 검토 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.

별첨 : 2022년 최저임금 전단지 및 리플릿. 끝.

제429호
2022. 01 10.
노무법인 두레